

#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2,262,221	10,267,867
일반회계	254,383,204	7,631,496
특별회계	87,879,017	2,636,371
공기업특별회계	35,709,861	1,071,29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709,861	1,071,296
기타특별회계	52,169,156	1,565,075
수질개선 특별회계	16,458,771	493,7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7,999	1,740
주택사업 특별회계	28,559,679	856,79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89,920	26,698
자활기금 특별회계	1,608,649	48,259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351,923	70,558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699,371	50,98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12,164	15,365
기반시설 특별회계	30,680	9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12,93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